

# 조선왕릉 石人の 척도 규범 연구

김이순\*

- I. 머리말
- II. 조선왕릉 석물제도 규범
- III. 석인의 척도 규범 변천
- IV. 맺음말

## I. 머리말

조선왕릉의 석물조각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규범에 따라 조성된 儀衛의 石儀物로, 『世宗五禮』, 『國朝五禮儀』, 『國朝喪禮補編』 같은 禮典에 석물의 종류, 형식, 수량, 크기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규범화로 인해 조선왕릉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고유성을 지닐 수 있었다. 그러나 석물의 크기에 관한 규범은 시기에 따라 변화를 보이며 모든 종류의 석물에서 변화가 나타난다. 특히 석인에서 분명하고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데, 이는 文武百官의 모습을 형상화한 석인을 소중히 여기고 석물의 크기 규범을 정할 때 規準으로 삼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sup>1</sup> 예를 들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교수

<sup>1</sup> 태종이 신덕왕후 貞陵을 천장 할 때 병풍석과 난간석은 광통교 다리 공사에 사용하도록 했으면서도 석인은 땅에 묻도록 명했다.

어, 1632년 인목왕후 목릉을 조성할 때에 석물 크기를 논의하면서 도감이 왕에게 “각 능 석물 크기가 같지 않아서 신들이 살펴보니 건원릉은 문무석의 길이가 각 7尺 5寸이니 이번 해릉[목릉]도 건원릉 문무석을 따르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언급한 기록이 있다.<sup>2</sup> 이처럼 석인은 능의 석물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석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禮典에 명시된 석인의 크기 변화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sup>3</sup>

禮典에 실린 조선왕릉 석물 크기에 관한 규범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국조상례보편』을 보면 문석인 길이를 ‘5尺 8寸 2分’으로, 分(푼) 단위까지 명시하고 있다.<sup>4</sup> 척도에 대한 규범을 정할 때는 기억과 실행이 쉬운 正數나 半數의 수치를 택하여 正尺이나 半尺을 쓰는 것이 상례이다. 게다가 1푼은 약 0.3cm로, 화강암 석물조각에서는 한 번의 釘질로도 깎아 나갈 수 있는 작은 크기다. 그런데도 ‘푼’ 단위까지 명시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禮典에 명시한 수치는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되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왕릉 석물 척도 규범 중에서 석인 크기(길이)의 산정 근거를 추적해보려고 한다.

그간 조선왕릉 석물에 관해서는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었으나 禮典에 명시되어 있는 석물의 크기 변화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왕릉의 석물 중에서 禮典과 석물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로, 조선왕릉의 석물조각 연구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II. 조선왕릉 석물제도 규범

### 1. 석물제도의 규범화

조선왕릉의 석물 크기에 관한 규범은 『國朝五禮儀』와 『國朝喪禮補編』에 공식적으로 명

<sup>2</sup> 『[仁穆王后]山陵都監儀軌』(1632), 「계사」, 7월 21일.

<sup>3</sup> 석인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높이(길이)-너비-두께’ 순으로 표기하며, 석인상이 세워진 상태를 강조하고자 할 때는 ‘높이(高)’로 표기하는데, 본고에서는 ‘길이’로 표기하고자 한다. ‘길이’는 사물의 긴 쪽을 지칭하는 단어이고, 조선시대 禮典의 규범에서 ‘長’으로 표기했기 때문이다.

<sup>4</sup> 본고에서 尺·寸·分 단위 중에서 同字異音 현상이 있는 ‘分’이 사물의 크기를 지칭할 때는 ‘푼’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分’이 10분의 1을 의미하는 ‘割’과 같은 용어로도 혼용되기 때문인데, 일례로, 7割을 의미하는 ‘七分’과 ‘七居七’ 등의 표현이 조선시대 각종 기록에서 산견된다.

시되어 있다. 조선시대 최초의 능인 신덕왕후 貞陵(1397년)은 조선의 왕릉제도가 정립되기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고려 공민왕릉을 典範으로 삼았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태종은 1408년에 太祖 健元陵을 조성하면서 조선의 독자적인 왕릉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제도의 기초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1415년에 『杜氏通典』과 『朱子家禮』를 참고하고<sup>5</sup> 『洪武禮制』와 고려의 제도를 가감하여 神懿王后(1337~1391) 齊陵과 태조 健元陵의 석물을 기초하여 조선왕릉 석물제도를 마련했다. 이 제도는 『세종실록』의 1420년(세종 2) 1월 3일, 定宗(1357~1419) 厚陵의 장례 기록 끝에 기재하여 후대에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실제 元敬王后(1365~1420)와 太宗(1367~1422) 獻陵 석물에 적용되었다. 이 내용은 후릉 장례 기록에 바로 이어서 별도의 제목 없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후릉의 석물 크기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태종 때 건원릉 상장의례를 바탕으로 만든 석물제도로, 조선왕릉 최초의 석물 규범인 〈國喪儀制〉이다.<sup>6</sup>

세종은 1446년에 昭憲王后 英陵을 조성하면서 〈國喪儀制〉를 보완하고 개정하여 5년 후인 1451년에 凶禮제도를 완성하였다.<sup>7</sup> 이것이 조선시대 최초의 정식 예제인 『世宗五禮』이고, 『세종실록』의 부록에 등재되어 있다. 「세종오례」에 명시된 석물제도, 특히 석인에 대한 내용은 별다른 수정 없이 1474년(성종 5)에 『국조오례의』로 반포되었다. 석실부터 능상 석물까지의 상세한 制樣과 尺度는 『국조오례의』 卷7 治葬條에 실었고, 동시에 『國朝五禮儀序例』를 간행하여 五禮儀의 절차를 실행할 때에 필요한 참고사항을 圖說과 함께 명시하였다. 이 규범은 조선왕릉 造營의 規準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조선왕릉에서 석실과 병풍석이 사라지는 등, 실제 왕릉 造營에 변화가 일어났다. 영조는 이러한 현실을 제도에 반영하여 1744년에 『國朝續五禮儀』를 편찬했는데, 석물 크기가 減殺되었음을 밝히고 있지만, 감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후에 제도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했는데, 1751년 孝純賢嬪과 이듬해 懿昭世孫의 상을 치르며 『喪禮受教』, 『喪禮儀』 등을 편찬하였고 1752년에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의례서인 『國朝喪禮補編』을 편찬했다.<sup>8</sup> 그러나 정제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어 『國朝五禮儀』, 『儀禮經傳』, 『家

<sup>5</sup> 『세종실록』 卷16, 4년(1422) 5월 갑신(28일).

<sup>6</sup> 『세종실록』 卷16, 4년(1422) 5월 갑신(28일),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김이순, 「『세종실록』의 후릉(厚陵) 산릉제도 기록에 대한 고찰」, 『정신문화연구』, 130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pp.91-117 참조.

<sup>7</sup> 『세종실록』 卷128, 「오례」, 서문.

<sup>8</sup> 『영조실록』 卷77, 28년(1752) 6월 경자(11일), 『국조상례보편』 初版本은 金在魯가 편집했는데, 1752년(영조 28) 壬申年에 편찬했기 때문에 壬申本이라 부르기도 하며, 6년 후 1758년(영조 34) 戊寅年에 편찬하는 改修版本은 戊寅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禮』, 『喪禮備要』, 의례, 등록 같은 다양한 문헌을 참고하고, 貞聖王后(1692~1757)와 仁元王后(1687~1757)의 상을 치르며 내용을 정치하게 보완하여 1758년 『國朝喪禮補編』改修版을 편찬했다.<sup>9</sup> 개수판본은 내용이 수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목이 같아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정조는 1786년에 초판본을 洗草하여 파기시켰다.<sup>10</sup> 그러나 현재 규장각에 초판본이 소장되어 있다. 초판본은 禮書로서의 기능은 상실했지만, 개수판본과 비교했을 때 내용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왕릉제도의 변천사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그 외에 여러 예서가 편찬되었지만 석인의 크기에 대한 새로운 규범은 찾아보기 어렵다.<sup>11</sup>

## 2. 석물제도에 사용된 營造尺 尺度

조선왕릉의 석인은 禮典에 명시된 크기대로 제작되었을까? 이와 관련 있는 기록 문헌의 진정성을 가능하고 규범의 실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禮典 규범의 수치와 현재 능에 배설되어 있는 석인의 크기를 비교해 보아야 하는데, 이에 앞서, 조선시대 예전에 사용된 기준자의 척도 확인이 필요하다.

조선시대에는 용도에 따라 周尺, 黃鍾尺, 造禮器尺, 布帛尺, 土圭尺, 營造尺 등을 사용하였는데, 자에 따라 1척의 길이도 서로 달랐다. 석물 제작 시에는 목공, 건축, 무기제조 등처럼 비교적 정교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던 營造尺을 주로 사용하였다.<sup>12</sup>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첫 기록은 『세종실록』 2년(1420) 1월 3일 5번째 기사로, “尺用營造尺 下倣此”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예전이나 의례에 영조척의 척도(눈금자)를 그림으로 그려 넣어 표준자로 삼도록 했다. 예컨대 영조는 『국조상례보편』에 영조척 圖說을 싣고, 이를 철저히 지킬 것을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sup>9</sup> 『국조상례보편』(1758), 『凡例』.

<sup>10</sup> 『일성록』 정조 10년(1786) 5월 을묘(13일).

<sup>11</sup> 정조는 예서들을 총정리하기 위하여 『國朝五禮通編』을 편집하도록 하였고, 더욱 광범위하게 총괄한 『春官通考』를 1788년(정조 12)에 편찬했다. 『국조오례통편』은 儀節 중심으로 1810년(순조 10)에 李祉永이 교정해서 완성한다. 『국조오례통편』 卷16에는 『국조오례의』와 『국조상례보편』의 치장조를 모두 실어 놓았는데, 『국조상례보편』 치장조에서 석인의 크기에 관한 내용은 생략되어 있다.

<sup>12</sup> 영조척을 산릉제도의 기준척도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다른 종류의 자가 사용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영릉의 틈이 벌어진 곳을 자로 잰 때 어떤 길이의 자를 써야 하는지 특별히 정해진 예가 없으니, 지금 이후로는 各陵으로 하여금 周尺 하나씩 만들어 비치하게 하고 이를 定式으로 삼게 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현종개수실록』 현종 14년, 1673년 5월 2일)는 기록이 있다.

正統 11년(1446)에 자의 모양을 상정하였다. 속세에서 쓰는 자들은 대체로 정밀한 것이 부족한데, 영조척이 비교적 심하여 釐定하여 식을 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筵稟한 뒤에 상정한 자로 고쳐서 하라는 내용으로 載錄하라. 여러 자들이 이미 이정하여 『普遍』에 그림으로 실려 있으니, 차후로는 이 그림을 가지고 자를 만들어 쓰도록 하라. 만약 추호라도 줄이는 일이 있으면, 該房의 낭청, 감조관을 勘處(죄를 심리하여 처단)하라.<sup>13</sup>

이렇듯 조선시대에는 척도의 표준을 제도로 정하고, 역대 왕실의례를 기록한 의궤와 토지 측량 의례 등의 문서에는 적용하는 척도의 종류와 길이를 기록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고종이 1902년에 度量衡器의 제조와 檢定을 총괄하는 平式院을 설치하고 미터법을 도입하기 이전까지는 척도의 표준화가 실행되지 못했다. 조선시대에는 기준 척도가 다양했기 때문에, 禮典에 실린 정확한 석물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는 영조척의 길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선시대 영조척은 유물도 여러 점 남아 있고, 의궤와 각종 문헌에는 영조척의 길이를 눈금으로 표시한 圖說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영조척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연구자에 따라 영조척의 길이를 다르게 산정하고 있다.<sup>14</sup> 필자는 왕릉 석물제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문헌을 검토하고 해당 예서에 실린 영조척 圖說을 실측하여, 석물 규범에 사용된 영조척의 길이를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왕릉 석물의 크기를 기록한 최초의 규범인 <국상의제> 제정 당시의 영조척 길이는 분명하지 않다. 태조 때의 영조척 길이가 32.21cm라는 주장이 있지만,<sup>15</sup> 고려와 조선 초기의 척도는 현재까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세종오례』의 底本人 <국상의제>는 세종이 척도를 정비하기 이전에 마련된 규범이지만, 『세종오례』의 척도를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sup>16</sup>

『세종오례』에는 영조척 척도의 圖說이 실려 있지 않다. 대신에 『세종오례』가 실린 『세종실록』 권128 五禮의 吉禮 序例에 ‘造禮器尺’ 도설이 실려 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영조척의 길이를

<sup>13</sup> 『國朝喪禮補編』(1758), 「圖說」, 부록 ‘諸尺’

<sup>14</sup> 이숙희, 『『악학궤범』의 척도 연구』, 『국악원논문집』 14 (2002) p. 113.; 양상현 외, 『조선시대의 척도 변천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5권 제4호 (1999) p. 162.; 김은미,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왕릉에서 찾을 수 있는 황금비와 금강비』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김환철, 『조선 후기 왕릉 석물조영에 사용된 척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박홍수, 『이조척도에 관한 연구』, 『대동문화연구』 4 (1967) p. 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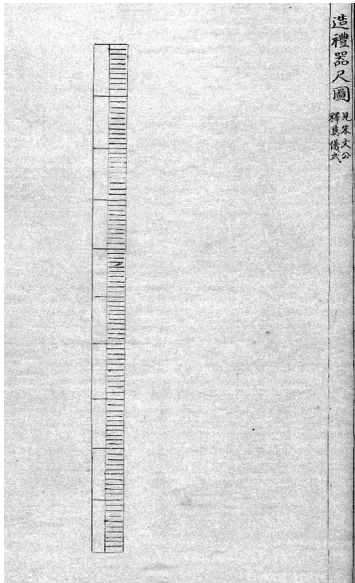
<sup>15</sup> 박홍수, 위의 논문, p. 212.

<sup>16</sup> <국상의제>에는 문석인 길이를 7척 5촌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국상의제>의 기준이었던 건원릉 문석인의 길이의 실측 치수는 232cm이다. 만약 태조 때 영조척 길이를 32.21cm로 적용하면 건원릉 문석인이 약 242cm나 된다. 반면 『세종오례』의 영조척 길이를 적용하면 약 235.5cm로, 실물의 치수에 가깝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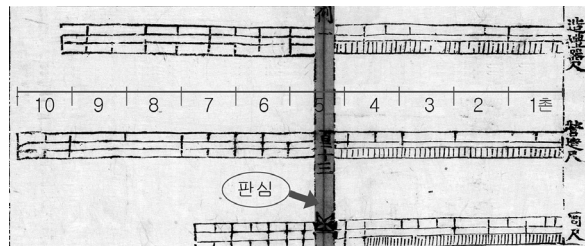
환산할 수 있다. 『경국대전』 工典의 度量衡 비례에 따르면, 조례기척 對 영조척은 1:1.0923이다. 이 비례로 『세종실록』의 조례기척 28.75cm로 계산하면<sup>17</sup> 「세종오례」의 영조척 척도는 약 31.4cm가 된다(도 1).

『국조오례의』에는 영조척 도설이 실려 있다. 『國朝五禮儀序例』(1474년, 奎184) 卷1에 「度圖設」을 실어 영조척의 길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에서는 『국조오례의』의 영조척 1척을 27.5cm, 28.9cm, 29.9cm 등으로 서로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이 도설은, 실제 표준자로 활용하게 하려고 목판으로 찍은 것이기 때문에 소장본이 다르다 하더라도 오차가 발생할 수 없다. 그러나 『국조오례의』의 「度圖設」, 즉 눈금이 새겨진 자가 두 페이지에 걸쳐 찍혀 있어서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에 존재하는 폭 1cm 정도의 版心을 자의 길이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닌지가 관건이다(도 2).<sup>18</sup> 필자가 『국조오례의』에 실린 「度圖設」을 실측해서 눈금 간격을 분석한 결과로는 판심의 폭을 자의 길이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국조오례의』의 영조척 1척의 길이는 29.9cm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조상례보편』의 영조척 척도를 살펴보면, 1752년에 간행된 초판본에는 척도의 도설이 없고 1758년 개수판본의 卷6 「국조상례보편 도설」(奎3940)에는 영조척 도설이 실려 있다(도 3). 필자가 이것을 실측한 결과, 영조척 1척의 길이는 30.5cm이다.<sup>19</sup> 참고로, 1788년(정조



도 1 『세종실록』 卷128, 「五禮」의 吉禮 序例 「造禮器尺」 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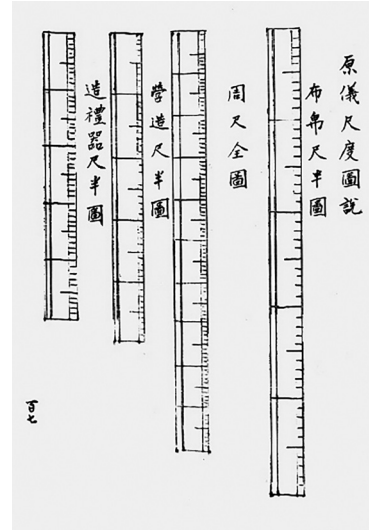


도 2 『세종실록』 卷128, 「五禮」의 吉禮 序例 「造禮器尺」 도설

<sup>17</sup> 造禮器尺 길이에 대해서는 건국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남문현 외), 『동물도량형』(문화재관리국, 1992), p. 51 참조.  
<sup>18</sup> 版心은 두 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하나의 목판에 새겨서 찍을 때, 책 제본을 전제로 판과 판 사이를 띄우는 공간이다.  
<sup>19</sup> 『國朝喪禮補編圖說』(1758, 奎3940) 卷6, 「諸尺」.



도 3 『국조상례보편 도설』(奎3940)의 척도 도설



도 4 『춘관통고』卷86의 '原儀尺度圖說'

12) 편찬된 『춘관통고』 卷86에는 '原儀尺度圖說'이 실려 있다(도 4). 여기에서 영조척의 척도를 29.1cm로 표시했는데, '原儀'는 『국조오례의』를 의미하므로, 앞서 언급한 版心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옮겨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sup>20</sup>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산릉제도 규범은 시기에 따라 사용된 영조척 길이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므로 석인의 크기를 정밀하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 III. 석인의 척도 규범 변천

이 장에서는 禮典에 실린 석인 크기 규범의 변화와 그 수치 산정의 근거를 추적하고자 한다. 우선, 예전에 실린 조선왕릉 석인의 크기 규범과 그 규범에 적용된 영조척 척도의 길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표 1).

<sup>20</sup> 『春官通考』(1788, 규12272) 卷86, '原儀尺度圖說'.

〈표 1〉 조선왕릉 석인 규범과 영조척 척도 (괄호 안은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

구분	연도	문석인 규범	무석인 규범	영조척 척도
신덕왕후 貞陵	1397년(태조 6)	長: 10척(추정)	長: 10척(추정)	32.21cm
〈국상의제〉	1420년(세종 2)	長: 7尺5寸(235.5cm) 廣: 3尺 厚: 2尺5寸	長: 7尺5寸(235.5cm) 廣: 3尺 厚: 2尺5寸	31.4cm
「세종오례」	1446년(세종 28)	長: 8尺3寸(260.6cm) 廣: 3尺 厚: 2尺2寸	長: 9尺(282.6cm) 廣: 3尺 厚: 2尺5寸	31.4cm
『국조오례의』	1474년(성종 5)	長: 8尺3寸(248.2cm) 廣: 3尺 厚: 2尺2寸	長: 9尺(269.1cm) 廣: 3尺 厚: 2尺5寸	29.9cm
『국조상례보편』 (임신년 초판)	1752년(영조 28)	長: 5尺1寸1分(155.9cm) 廣: 2尺1寸1分 厚: 2尺	長: 5尺4寸(164.2cm) 廣: 2尺2寸 厚: 1尺9寸	30.5cm
『국조상례보편』 (무인년 개수판)	1758년(영조 34)	長: 5尺8寸2分(177.5cm) 廣: 1尺8寸9分 2尺1寸9分 厚: 1尺6寸 1尺9寸9分	長: 6尺2寸(189.1cm) 廣: 1尺9寸4分 2尺2寸4分 厚: 1尺8寸 1尺9寸4分	30.5cm
『춘관통고』	1788년(정조 12)	長: 5尺8寸2分(169.4cm) 廣: 1尺8寸9分 2尺1寸9分 厚: 1尺6寸 1尺9寸9分	長: 6尺2寸(180.4cm) 廣: 1尺9寸4分 2尺2寸4分 厚: 1尺8寸 1尺9寸4分	29.1cm

## 1. 신덕왕후 貞陵의 석인 크기

고려 장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한 후 최초로 조성한 능은 신덕왕후 貞陵(1397년)이다. 貞陵의 조영 책임자는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의 玄·正陵의 조성에 참여한 金師幸(?~1398)이었으며, 노국대장공주의 正陵과 조선의 신덕왕후 貞陵은 모두 왕이 사랑한 배우자의 능이었기에 많은 공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貞陵은 1409년(태종 9)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기 때문에 원래 모습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다만 광통교의 부재로 사용된 병풍석을 통해 정릉의 체제와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도 5). 다시 말해, 광통교에 노출되어있는 병풍석 크기를 가지고 봉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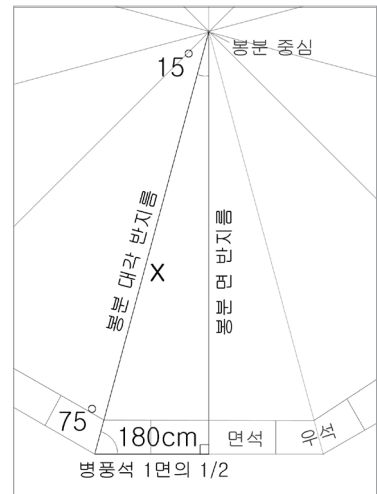
도 5 공민왕릉(좌)과 신덕왕후 정릉(우) 병풍석 비교

크기를 추산할 수 있으며, 석물의 크기는 대체로 서로 연동되기 때문에 석인의 크기도 짐작할 수 있다.

광통교의 정릉 병풍석을 실측하면, 12각 병풍석의 1면 길이는 面石이 평균 240cm이고, 隅石의 양면 폭이 120cm인데, 이를 합하면 12각 병풍석 1면의 길이는 360cm이다. 이를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봉분의 12각 대각 반지름의 길이(x)가 695cm로 산출된다(도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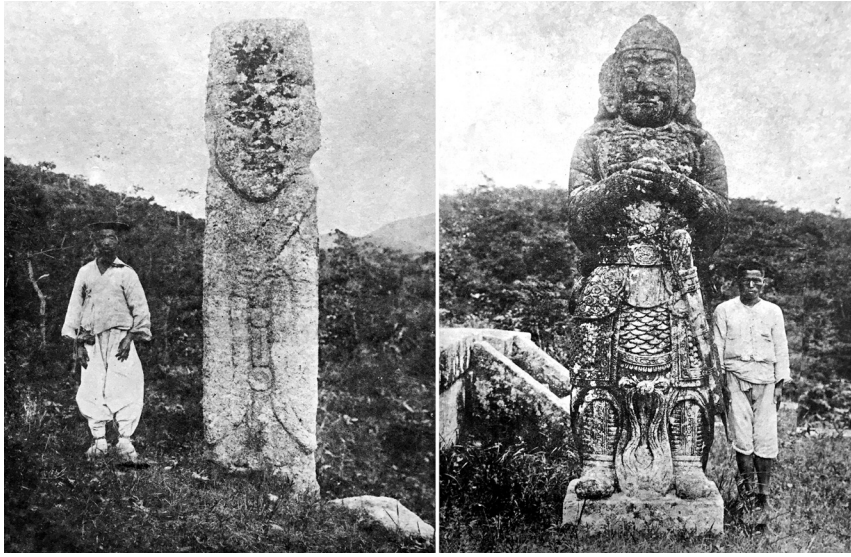
$$\begin{aligned}
 x &= (360\text{cm} \div 2) \div \cos 75^\circ \\
 &= 180 \div 0.2588 \\
 &= 695\text{cm}
 \end{aligned}$$

따라서 貞陵 봉분의 대각 지름은 695cm의 두 배인 1,390cm, 즉, 13.9m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玄·正陵 봉분의 대각 지름 13.7m보다 약간 크다.<sup>21</sup> 이렇듯 貞陵과 玄·正陵 봉분이 비슷한 크기로 조성되었으므로 석인상들 역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도 6 신덕왕후 정릉 봉분크기 계산

<sup>21</sup> 김인철, 『고려무덤 발굴보고』 (백산자료원, 2003), p. 101. 그리고 제국대장공주 高陵의 병풍석 1면의 길이는 9.3척, 면석의 폭은 6.23척이며, 공민왕릉의 병풍석 1면의 길이는 11척 면석의 폭은 7척으로, 모두 신덕왕후 貞陵의 1면 길이 12척, 면석 8척보다 작다는 조사보고서가 남아 있다.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朝鮮總督府, 1925), p. 411 및 p. 427.



도 7 제국대장 고릉(좌)과 공민왕릉(우) 석인(『조선고적도보』 7권)

현재 玄·正陵의 석인 크기는 여러 자료에 명시되어 있으나 서로 달라서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지만, 대체로 300~350cm라고 하겠다.<sup>22</sup> 『朝鮮古蹟圖譜』 7권에 제국대장공주 高陵(1297년)과 공민왕릉의 석인 사진이 각각 실려 있는데, 각각의 석인들과 그 옆에 서 있는 사람과 비교해보면, 석인은 사람 키의 두 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330cm 정도로 추정된다(도 7).<sup>23</sup>

제국대장공주 高陵 석인과 공민왕릉 석인의 크기가 모두 330cm 정도인 것은 노국대장공주 正陵을 조성할 때 제국대장공주 高陵을 典範으로 삼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4일(임진)에 정릉에 장사지내기로 하였는데, 왕은 장례의 의장 행렬의 차례와 산릉제도를 그리도록 하여 이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喪事는 齊國長主 忠烈王妃의 전례에 의거하였는데 사치

<sup>22</sup> 공민왕릉 석인의 크기를 명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김인철, 『고려무덤 발굴보고』 (백산자료원, 2003), p.102.; 『조선유적유물도감』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1992), p.32.; 임영애, 「개성 공민왕릉 석인상 연구」, 『강좌미술사』 17 (2001), p.68.; 최현아, 「공민왕릉」, 『역사과학』 4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p.73.; 『조선왕릉 종합학술보고서』 I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pp.28-29.

<sup>23</sup> 高陵 석인의 길이를 장경희, 『고려왕릉』 (예맥, 2013) p.131에는 330cm로, 김인철, 앞의 글 p.75에는 245cm로 표기하고 있다.

가 극도에 달해 府庫가 텅 비게 되었다.<sup>24</sup>

제국대장공주 高陵과 노국대장공주 正陵 석인의 크기를 330cm 정도로 정한 것은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일 것이다. 고려시대 척도 연구에 따르면 1척의 길이가 32.58cm였고, 조선 태조 때 1척의 길이 32.21cm로 계산하여도 10척이 된다.<sup>25</sup> 한자의 ‘十’은 완전, 원만, 길상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범사에 10을 표준수량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完備의 의미로 통용되었다.<sup>26</sup>

고려시대 척도와 관계없이 노국대장공주 正陵과 신덕왕후 貞陵의 석인 길이가 10척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간접적인 자료도 있다. 16세기의 석물 거대기에 조성된 석인들은 3미터가 넘는, 공민왕릉 석인과 비슷한 크기이다. 흥미롭게도 3미터가 넘는 석인들이 실제 크기는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길이를 모두 10척으로 간주하였다는 사실을 『[恭惠王后純陵]修改都監儀軌』에서 확인할 수 있다(표 2).<sup>27</sup>

〈표 2〉 『[恭惠王后純陵]修改都監儀軌』별단 석물 척량

구분	실측 길이	수개도감 의궤 별단 기록			
		길이	하체 둘레	복두/투구 둘레	
성종 선릉	문석인	314cm	10 尺	11尺 8寸	6尺 8寸
	무석인	315cm	10 尺	11尺 8寸	7尺 1寸
정현왕후 선릉	문석인	313cm	10 尺	12尺	7尺
	무석인	316cm	10 尺	12尺 5寸	7尺
중종 정릉	문석인	318.5cm	10 尺	12尺 5寸	7尺 3寸
	무석인	321.5cm	10 尺	13尺	8尺

따라서 조선 최초의 능인 신덕왕후 정릉의 석인 크기는 玄·正陵 석인과 같은 10척이었을 것이고, 이 크기는 이후 조선왕릉 석물 크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sup>24</sup> 『동사강목』 제15상, 을사년, 공민왕 14년 4월.

<sup>25</sup> 여은영, 「고려시대의 양제: 결부제 이해의 기초로서」, 『경상사학』 3 (1987).

<sup>26</sup> 박홍수, 「한자 숫자의 문화적 의미 결과보고서」(한국외국어대학교, 2006), p.16.

<sup>27</sup> 『[恭惠王后純陵]修改都監儀軌』(1648), 「계사」, 戊子 윤3월 19일, 별단.

## 2. 〈國喪儀制〉의 석인 규범

태종이 1415년(태종 15)에 예조에 명하여 만들기 시작한 상장제도인 〈국상의제〉는 건원릉 의궤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건원릉의 석인 길이가 어떻게 7척 5촌으로 정해졌는지를 규명하면, 〈국상의제〉에서 석인 길이가 7척 5촌으로 규범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태종은 신의왕후 齊陵과 태조 健元陵을 신덕왕후 貞陵보다 규모를 축소하여 조성했다. 이 때는 貞陵이 도성 밖으로 천장(1409년) 되기 전이다. 현재 알려진 齊陵의 석인 길이는 문석인 295cm, 무석인 298cm인데,<sup>28</sup> 이러한 수치에는 대석의 길이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실제 석인상 키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공민왕릉이나 신덕왕후 정릉의 석인보다 작아졌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또 건원릉 석인도 문석인 232cm, 무석인 223cm로 작아졌는데,<sup>29</sup> 이 수치를 척관법으로 환산하면 7.5척이다.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다음(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 의궤에서도 건원릉 문석인의 길이를 7.5척으로 기록하고 있다.<sup>30</sup>

〈표 3〉 『恭惠王后純陵』修改都監儀軌, 별단 석물 척량

연도	의궤	문석인	무석인	비고
1632	[仁穆王后穆陵]山陵都監儀軌	7.5척	7.5척	「계사」 7월 21일
1648	[恭惠王后純陵]修改都監儀軌	7.5척	7.0척	「계사」 윤3월 19일 별단
1681	[仁敬王后翼陵]山陵都監儀軌	7.2척	7.3척	상권, 「계사」 12월 7일 별단
1688	[莊烈王后徽陵]山陵都監儀軌	7.5척	7.3척	상권, 「계사」 9월 23일 별단

그러면 건원릉 문석인의 길이를 7.5척으로 정한 근거는 무엇일까? 특정 능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능의 제도에서 일정 비율로 가감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아마도 신덕왕후 貞陵을 比定의 기준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크다.<sup>31</sup> 앞서 언급했듯이 정릉 봉분의 대각 지름이 13.9m였고 건원

<sup>28</sup> 『조선왕릉 종합학술보고서』I(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pp. 192-193.

<sup>29</sup> 『조선왕릉 종합학술보고서』I(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p. 68.

<sup>30</sup> 『[仁敬王后翼陵]山陵都監儀軌』에서 문석인을 7.2척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오류일 것이다. 실제로는 문석인이 무석인보다 큰데도 불구하고 이 의궤에서는 무석인을 문석인보다 큰 것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sup>31</sup> 태종이 신덕왕후를 왕후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으므로 규모를 比定할 때 신덕왕후 貞陵이 아닌 공민왕릉으로 정했을 수도 있으나 결과적으로 수치에서는 차이가 없다.

릉 봉분의 대각 지름은 약 10.1m인데,<sup>32</sup> 이는 건원릉을 정릉보다 약 4분의 1을 축소해서 조성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석인 역시 정릉의 10척에서 4분의 1을 감한 7.5척으로 조성했을 것이다.

축소비율을 4분의 1로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석물의 크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4분의 1의 비율로 줄이는 또 다른 사례가 있다. 영조가 1752년 懿昭世孫의 묘를 조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다.

이번에는 묘소에 차등을 두라고 이미 하교하였으니, 문석·망주·장명등 외에는 단지 호석과 마석을 각각 한 쌍씩만 설치하되 종전의 제도에 비하여 모두 4분의 1을 감하고(減四分之一) 혼유석과 표석도 두 자를 감하며 정자각의 길이와 넓이도 4분의 1을 감하도록 하라.<sup>33</sup>

4분의 1을 감하는 것은 동양의 관습이었다. 許慎의 《說文》에 따르면,四是 四分된 형상을 그렸다고 하였으며,四是 나뉜다는 의미를 갖게 되고 인신하여 사망과 연결하게 된 것으로, 가감 시에 4분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흔한 관습이었다.<sup>34</sup>

제릉과 건원릉의 규모를 貞陵보다 감한 것은 태종의 의지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에 교묘하게 아첨을 잘했던 金師幸이 노국대장공주 능을 공민왕의 뜻에 따라 극도로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조성했으며,<sup>35</sup> 고려의 쇠망은 正陵의 役事에서 연유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sup>36</sup> 게다가 태조가 김사행을 시켜 신덕왕후 정릉을 공민왕릉처럼 조영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을 태종은 왕릉을 화려하고 장대하게 조성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결국, 왕자의 난 중에 김사행은 처형되었다. 실록에 기록된 다음과 같은 내용은 태종의 의중을 충분히 짐작케 해준다.

옛날 환관 김사행이 태조를 섬겨 총애를 얻어 관직이 판내시부사에 이르렀는데, 그때에 그를 ‘廣大府事’라고 불렀습니다.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民力이 지쳐서 피로하였으나, 토목의 역사를 首唱하여 興天寺의 한 절을 營造하는 데 지나치게 사치하니, 당시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무인년(태조 7년 9월 3일)에 태종께서 姦臣을 주멸하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김사행이 만약 살아있

32 『조선왕릉 종합학술보고서』I(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p. 120.

33 『영조실록』 卷76, 28년(1752) 3월 병인(5일).

34 박홍수, 『한자 숫자의 문화적 의미 결과보고서』(한국외국어대학교, 2006), p. 9에서 재인용.

35 『고려사절요』 卷29, 「공민왕 4」, 계축 22년(1373).

36 『동사강목』 제15하, 임자년, 공민왕 21년(1372).

다면 장차 민폐가 될 것이다.'하고, 아울러 誅殺하였습니다.<sup>37</sup>

왕릉을 화려하게 조성하는 것은 민폐를 끼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태종은 기본적으로 왕릉을 간소화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왕릉에서 석실을 없애고 灰隔으로 바꾼 것은 세조이지만, 태종이 이미 大臣의 禮葬에서 석실을 쓰는 것을 금하였다.<sup>38</sup> 건원릉에서도 석실을 쓰지 않으려고 했으나 신하들의 반대로 석실을 썼던 사실을 실록을 통해 알 수 있다.<sup>39</sup> 원경왕후 헌릉을 조성할 때에 하나의 돌로 된 석실 덮개가 넓고 두터워서 운반하기가 어려우므로 운반하기 쉽게 두 쪽으로 쪼개도록 했는데, 나아가 이를 법으로 정해서 뒷날의 규례로 삼도록 하였다. 신도 비도 百歲 뒤를 기다려서 세우게 하는 등 석물의 사용을 가능한 줄였으며, 또 능의 원찰 건립도 금하였다.<sup>40</sup> 결국, 건원릉을 貞陵의 4분의 1 규모로 축소하면서 석인의 크기도 10척에서 7척 5촌으로 줄였고, 이 크기를 <국상의제>에서 석물제도로 규범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 3. 『世宗五禮』와 『國朝五禮儀』 석인 규범

<국상의제>의 석물제도는 『세종오례』로 계승되어 『세종실록』 부록에 다음과 같이 실려 있는데, 석인의 크기에서 변화가 확인된다.<sup>41</sup>

左右立文石人各一【刻著冠帶執笏之象，長八尺三寸，廣三尺，厚二尺二寸。臺石連足高三尺四寸，出地六寸，刻雲，足入地二尺三寸】。石馬各一【高三尺七寸，廣二尺，長五尺。臺石及四脚內與石羊同，在文石人之南差後】。下階左右立武石人各一【刻著甲冑佩劍之象，長九尺，廣三尺，厚二尺五寸。臺石，與文石人同】。<sup>42</sup>

<sup>37</sup> 『단종실록』 卷6, 1년(1453) 5월 (계해)7일. 김사행이 처형될 때는 정릉이 완성된 다음 해인 태조 7년이였다. 처형 이틀 후에 태조가 정종에게 양위하는 교서를 내리는 것으로 보아 이때 병중에 있던 태조가 아닌 태종이 주도하여 처형한 것으로 보인다.

<sup>38</sup> 『태종실록』 卷12, 6년(1406) 윤7월 을유(28일).

<sup>39</sup> 『태종실록』 卷16, 8년(1408) 7월 을묘(9일).

<sup>40</sup> 『세종실록』 卷9, 2년(1420) 8월 계축(17일).

<sup>41</sup> 『세종실록』 卷113, 28년(1446) 7월 을유(19일). 소헌왕후 장례 시 '능실의 제도'에는 석인의 크기를 명시하지 않았다.

<sup>42</sup> 『세종실록』 卷134, 「五禮」, 흥례, 의식, 치장. 문장 서술방식 역시 <국상의제>와 같아 『세종오례』의 底本이 <국상의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명시된 문석인 8尺 3寸, 무석인 9尺은 1446년(세종 28)에 조성된 昭憲王后 英陵의 산릉도감 등록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이 척수를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문석인 260.6cm, 무석인 282.6cm이다. 현재 인릉에서 재사용되고 있는 舊 英陵 석인의 길이가 문석인 258.5cm, 무석인 278cm이므로,<sup>43</sup> 소헌왕후의 석물 크기가 그대로 「세종오례」에서 석인의 크기 규범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문석인 길이를 8尺 3寸으로 정한 근거는 무엇일까? 앞선 禮制인 〈국상의제〉의 석물 규범을 기준으로 하여 크기를 다시 산출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수치는 〈국상의제〉의 7尺 5寸에 특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을 것이다. 十進法으로 7尺 5寸에서 10분의 1인 1할을 더하면 8尺 2寸 5분이 되며, 이를 寸 단위로 절상하면 8尺 3寸이라는 문석인 길이가 나온다.<sup>44</sup>

「세종오례」에서 주목할 점은 무석인을 문석인보다 크게 규정한 것이다. 공민왕릉 이래로 문무석인의 크기는 거의 비슷하며, 건원릉에서는 오히려 문석인이 무석인보다 10cm 정도 크게 제작되어 있다. 그런데 「세종오례」에서 무석인의 크기는 〈국상의제〉의 규범 長 7尺 5寸, 廣 3尺, 厚 2尺 5寸에서 길이만 1尺 5寸(약 37cm)을 더해 9尺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7尺 5寸에서 문석인은 10분의 1을 더해 8척 3촌의 길이로 정하고, 무석인은 문석인보다 크게 하려고 10분의 2를 더해 9척을 산출한 것이다. 이때 석인의 폭과 두께는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仁陵에 설치되어있는 舊 英陵의 무석인은 〈국상의제〉를 적용해서 조성한 현릉 무석인보다 키만 커진 늘씬한 모습이다(도 8).

「세종오례」의 석인 크기가 〈국상의제〉에서 명시한 크기보다 커진 이유는 신하들이 〈국상의제〉에 따라 조영한 현릉의 석



도 8 현릉(좌)과 구 영릉(우) 무석인 크기 비교

<sup>43</sup> 『조선왕릉 종합학술보고서』Ⅷ(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p. 68 및 p. 285. 舊 英陵 석물의 재사용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김이순, 「세종대왕 '구 영릉(舊 英陵)' 석물 연구」, 『정신문화연구』 114 (2009), pp. 155-190 참조.

<sup>44</sup> 十進法에 의한 分割은 조선시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조세제도에서 分數災를 사용했는데, 10분의 1만을 수확했으면 '九分災'라고 하고 10분의 2만 수확했으면 '八分災'라고 했다. 『승정원일기』, 영조 1년, 을사 7월 22일.

물 규모가 장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減殺에 대한 태도가 분명했던 태종처럼 세종도 산릉제도의 간소화에 관심을 기울였다. 세종은 헌릉 옆에 부인의 무덤인 英陵을 조성하면서, 심지어 “나무로 欄干을 만들고 석양·석호와 翼石을 쓰지 말라. 경들은 의논하여 아뢰라.”라고 하기도 했다. 물론 소헌왕후 영릉의 산릉도감 都提調였던 우의정 河演(1376~1453)과 제조 李蕝의 반대로 실행되지는 않았다.<sup>45</sup> 이러한 정황에 미루어 볼 때, 소헌왕후 영릉의 석인상 규모가 커진 것은 세종의 의지보다 대신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상의제>의 석인 크기에서 문석인은 10분의 1을 더했고 무석인은 그 두 배인 10분의 2를 더하여 정해진 『세종오례』의 규범이 별다른 수정 없이 1474년(성종 5) 편찬된 『국조오례의』에 석물제도로 그대로 수록된 것이다. 다만, 영조척의 길이가 달라졌기 때문에 실제 크기에는 약간의 변동이 발생했다(표 4).

〈표 4〉 『세종오례』와 『국조오례의』 석인상 길이

구분		문석인		무석인		영조척 척도
		규범	환산 길이	규범	환산 길이	
『세종오례』	1446년(세종 28)	長: 8尺 3寸	260.6cm	長: 9尺	282.6cm	31.4cm
『국조오례의』	1474년(성종 5)	長: 8尺 3寸	248.2cm	長: 9尺	269.1cm	29.9cm

#### 4. 『國朝續五禮儀』의 석인 규범

『국조오례의』가 편찬된 지 270년이 지난 1744년(영조 20)에 당시 예조판서 李宗城 등은 영조의 지시로 『국조오례의』를 개정하여 『국조속오례의』를 편찬하였고, 『국조오례의』에서 개정된 주요 사항을 『國朝五禮儀考異』 편에 별도로 수록했다. 석인의 변동에 관한 내용은 <凶禮考異> ‘治葬條’에 실려 있으며, “석물의 척수가 高大하여 이번에는 제도를 減殺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숙종이 신사년(1701)에 명릉의 석물을 후릉의 제도를 따르라고 하여 검약하게 되었으며, 을사년(1725)의 의릉 석물도 그 제도를 따랐다고 설명하고 있다.<sup>46</sup> 1698년(숙종 24) 莊陵과 思陵을 봉릉

<sup>45</sup> 『세종실록』 卷112, 28년(1446) 4월 경자(3일).

<sup>46</sup> 『國朝續五禮儀考異』 卷1, 「凶禮考異」 ‘治葬條’(奎1479). 경종이 1724년(경종 4, 갑진) 8월 25일에 승하했고 12월 16

할 때 尺量한 후릉 석인의 크기는 문석인 5尺 1寸, 무석인 5尺 4寸이었다.<sup>47</sup> 이 크기는 신덕왕후 貞陵의 석인 10尺에서 4분의 1을 줄인 건원릉 석인(《국상의제》)보다도 겸양을 보인 것으로, 다시 4분의 1을 줄인 것이다. 이와 같이 『국조속오례의』에서는 명릉과 의릉의 석물은 오례의 제도를 따르지 않고 감쇄했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척수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sup>48</sup>

## 5. 『國朝喪禮補編』 初版本의 석인 규범

영조는 1752년에 문석인 길이 5尺 1寸 1分, 무석인 길이 5尺 4寸으로 척수를 규범화하여 『국조상례보편』의 초판본을 간행했다. 초판본 『국조상례보편』 卷2 치장조의 서두에 原書(『국조오례의』)의 석실제도는 灰隔으로 바뀌어서 석물제도 역시 많이 減損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sup>49</sup> 흥미로운 점은 석인의 크기를 5尺 1寸 1分, 즉 1푼(分)까지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석물의 크기를 寸 단위까지만 명시했던 이전과 달리, 1푼까지 명시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국조상례보편』에 수록된 척수의 근거는 8년 전에 편찬된 『국조속오례의』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다. 『국조속오례의』의 「考異」 편에서 숙종이 명릉 석물은 겸양한 후릉의 제도를 따르라고 지시했던 사항을, 『국조상례보편』 초판본에서는 숫자로 명시하여 규범으로 삼은 것이다. 숙종은 1698년 단종 莊陵을 봉릉할 때에 석물제도가 간소한 후릉을 따르라고 지시하였고 그 뒤에도 定式으로 삼도록 하였다.<sup>50</sup> 숙종은 1701년(숙종 27) 인현왕후 국장 때에도 같은 지시를 다시 내렸고, 제조 趙相愚와 대부석소 감조관 朴弼揆가 장인들을 인솔하여 후릉 석물을 尺量하여 보고하였다. 그 내용을 『仁顯王后明陵』 山陵都監儀軌에 ‘厚陵石物體制尺量’ 별단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해 두었다.

文石二, 臺上各長五尺一寸一分, 臺下入地一尺, 上廣一尺九寸, 下廣二尺一寸一分, 上厚一尺六寸, 下厚二尺, 冠長八寸, 廣八寸, 面上長七寸, 廣六寸五分.

일에 장사 지냈으므로 모든 절차는 갑진년에 끝났다. 여기서 을사년은 장사 후 의례를 편찬한 연도를 말하므로 의례에 바탕을 두고 규례를 작성했음을 의미한다.

<sup>47</sup> 『端宗莊陵』 奉陵都監儀軌(1688), 「계사」, 11월 20일.

<sup>48</sup> 당시에 석물이 크게 간소화된 배경에 대해서 김이순, 「장릉과 사릉의 석물 연구: 추봉과 석물 간소화를 중심으로」, 『문화재』 45 (2012), pp. 34-51 참조.

<sup>49</sup> 金在魯 編輯, 『國朝喪禮補編』(1752), 卷2, 「治葬」

<sup>50</sup> 『숙종실록』 卷32, 24년(1698) 10월 경오(29일).

武石二, 臺上各長五尺四寸, 臺下入地一尺, 上廣二尺, 下廣二尺二寸, 上厚一尺七寸, 下厚一尺九寸, 冑長一尺二寸, 面上長七寸, 廣七寸.<sup>51</sup>

이 별단의 내용은 놀랍도록 상세하다. 석인의 크기는 전체 길이, 너비, 두께를寸 단위까지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sup>52</sup> 그러나 이 별단에서는 석인상을 상반신과 하반신으로 나누고 모자와 투구, 얼굴의 크기까지 측정하였고分 단위까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바로 이 별단의 내용이『국조상례보편』의 규범과 일치하므로, 후릉을 척량한 치수가『국조상례보편』초판본의 석인 크기 규범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국조상례보편』초판본에서 석물의 크기를 1푼까지 명시한 것은 숙종이 '정식'으로 삼으라고 했던 후릉 석물의 실제 크기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나타난 결과였다고 하겠다.

그런데 명릉의 실제 석인의 크기는 이 치수와 차이가 있다. 명릉에 설치되어 있는 석인의 크기를『국조상례보편』의 척수(1尺=30.5cm)로 환산하면, 문석인은 5척 6촌(171.4cm), 무석인은 5척 7촌(173.6cm)으로 후릉 석물보다 조금 크다. 『[仁顯王后明陵]山陵都監儀軌』(1701년)에 기록된 석물 치수는 실제로 배설한 석물의 크기가 아니라, 후릉 척량 별단의 치수 중에서 관모와 얼굴의 크기를 제외하고 그대로 옮겨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국조상례보편』초판본 규범의 준거는, 엄밀히 말하면 후릉 별단이 아니고 『[仁顯王后明陵]山陵都監儀軌』의 석물 기록이다. 이러한 사실은 석인 크기로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혼유석의 크기로 확인할 수 있다. 즉, 『[仁顯王后明陵]山陵都監儀軌』에 실린 혼유석의 폭이 후릉 별단에는 5.5척으로, 명릉 기록에는 5.55척으로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국조상례보편』초판본의 혼유석 크기 규범은 5.55척이기 때문에 명릉의 석물제도를 따랐음을 알 수 있다.

## 6. 『國朝喪禮補編』改修版本의 석인 규범

영조는『국조상례보편』초판본을 정교하게 다듬어 1758년에 개수판을 간행했다. 석인 크기는 문석인 길이 5척 8촌 2푼, 무석인 6척 2촌으로 역시 푼 단위까지 세밀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 크기는 초판본 기록보다 14% 정도 커진 것인데, 초판본의 문석인 길이 5척 1촌 1푼(155.9cm)

<sup>51</sup> 『[仁顯王后明陵]山陵都監儀軌』(1701) 상권, 「계사」, 9월 1일.

<sup>52</sup> 숙종 24년(1698) 장릉과 사릉을 봉릉하며 같은 후릉을 척량한 별단에는 문석인의 길이를 5尺 1寸으로, 寸 단위까지만 기록했다. 『[端宗莊陵]奉陵都監儀軌』, 「계사」, 11월 20일.

은 보통 성인 남자의 신장보다도 작으므로, 왕릉의 석인상의 규모로는 너무 작다고 판단했기 때  
문이었을 것이다.<sup>53</sup>

『국조상례보편』개수판본의 석인 크기 규범은 계산으로 산출된 척수일 가능성이 크다. 『국  
조상례보편』개수판본에서 “석물의 제도는 中宗 이후 減損과 變改가 많아서 현행 사례에 따라  
바로 잡는다.”라고 언급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54</sup> 개수판본에서 현행 사례를 반영했음을  
여러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四方石을 들 수 있다. 사방석은 石室을 灰隔으로  
바꾼 후, 관을 안치하는 內壙이 아닌 부장품을 넣는 退壙을 덮던 거대한 석물인데,<sup>55</sup> 초판본에  
서는 사방석의 크기와 설치 방법까지 설명하고 있으나 개수판본에서는 완전히 삭제하였다. 또  
1752년 초판본 편찬 이후 1757년에 정성왕후 弘陵을 조성하면서 정자각을 8칸에서 5칸의 제도  
로 바꾸었는데, 이러한 규정을 바로 『국조상례보편』개수판본에 반영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sup>56</sup>

개수판본의 석물 크기가 규범화되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조성된 각 능 산릉도  
감의궤에 기록된 석인 크기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개수판본의 석물제도는 정성왕후 국장이  
있던 1757년 이전에 완성되었는데, 그 시기에 조성된 왕릉의 의궤는 모두 영조의 선왕인 경종과  
관련이 있다. 경종 즉위 전에 사망한 경종 원비 단의왕후 초장 시의 『[端懿嬪]墓所都監儀軌』와  
단의빈묘를 추봉한 『[端懿王后惠陵]石物追排都監儀軌』가 있고, 경종과 계비 선의왕후 의릉의  
산릉도감의궤가 있다.<sup>57</sup> 이들 의궤에서 경종과 원비 능의 석인 크기는 평균 5尺 8寸 2分 5厘이며,  
여기서 厘의 값을 切削하면 문석인 길이 규범인 5尺 8寸 2分이 된다.

한편, 경종과 원비 및 계비의 모든 능의 산릉도감의궤에 기록된 무석인 길이를 평균하면  
6尺 2寸이라는 무석인의 크기 규범이 된다(표 5). 무석인의 계산을 달리한 것은 문무석의 크기  
에 차이를 두기 위해서였다고 판단된다. 『국조오례의』나 초판본에서 무석인을 더 크게 한 전례  
를 따르려고 한 것으로, 규모가 큰 선의왕후릉 무석인도 크기 규범 산출에 포함시켰을 것이다.

53 청백리로 뽑혔던 문신 이세화(李世華, 1701년卒)묘 석인도 174cm였으며, 성종 때 정한 묘제 석물 규정에서 대군  
묘의 석인 길이가 6척이었다. 간소화 시기라 하더라도 왕릉 석인의 크기 규범을 너무 작게 정하는 것은 왕의 권위  
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사대부 무덤의 석물을 왕릉 석물보다 크게 조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하들로서도 자칫 僭濫해지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었다.

54 『국조상례보편』(1758) 卷1, 「치장」.

55 四方石은 길이가 400cm, 무게가 10톤이나 되는 석물로, 6톤 정도인 혼유석보다 커서 왕릉 석물 중에서 가장 크고  
무거웠다.

56 『[貞聖王后弘陵]山陵都監儀軌』상권, 「계사」, 3월 23일; 『영조실록』 卷90, 33년(1757) 8월 기사(10일).

57 혜릉과 의릉의 실제 석인 크기는 명릉과 비슷하나, 혜릉 의궤에는 『국조상례보편』초판본 기준, 의릉 의궤에는 <국  
상외제>와 『국조상례보편』초판본의 평균치에 가깝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조오례의』에서 문석인과 무석인의 길이 차이인 0.7尺을 반으로 감쇄한 비율인 0.35尺의 차이로 조정하였다. 즉, 『국조상례보편』 개수판본의 문석인 5尺 8寸 2分에서 0.35척을 더하면 6尺 1寸 7分이 되는데, 여기에서 끝의 푼 단위를 切上하면 마찬가지로 6尺 2寸이라는 수를 얻을 수 있게 된다.<sup>58</sup>

〈표 5〉 경종 관련 의례의 석인 길이와 『국조상례보편』(1758년)의 석인 규범

능주	능호	연도	의례	문석인	무석인	비고
경종 원비	혜릉	1722년	『[端懿王后惠陵]石物追拜都監儀軌』	5.15척	5.6척	문석인은 『단의빈 묘소도감의례』(1718년)
경종	의릉	1724년	『[景宗懿陵]山陵都監儀軌』	6.5척	6.5척	
경종 계비	의릉	1730년	『[宣懿王后懿陵]山陵都監儀軌』	(6.5척)	6.5척	문석인은 계산에서 제외
평균				5.825척	6.2척	문석인은 分단위로 절삭

이렇게 『국조상례보편』 개수판의 석인 규범은 정성왕후 弘陵 조성 이전에 수정되었고, 영조의 선대 왕인 경종 관련 능의 의례와 등록을 모두 가져다가 참조하여 산출한 수치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여기서 영조가 부모 능인 숙종 명릉이 아니고 이복형인 경종 의릉을 택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더구나 당쟁이 극심했던 시기에 경종은 소론, 영조는 노론의 정치적 배경에 있었다는 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후사가 없던 경종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을 것이다. 영조는 경종의 장례절차나 의례에 정성을 기울였으며, 오히려 이는 당쟁을 완화할 수 있는 탕평책의 하나였을 수도 있다. 게다가 경종 관련 산릉제도는 당시에 영조의 주도 하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규범이 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조선왕릉 석물제도 척도의 변천사를 석인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는데, 이러한 변천 과정은 병풍석을 통해서도 가늠할 수 있다. 물론 병풍석은 전 시기에 조성된 석물이 아니므로 석인과 같은 일관된 흐름을 살피기는 어렵다. 다만, 조선 초기에 조성된 능 중에서 후대 석물제도의 규범이 되었던, 신덕왕후 정릉, 태조 건원릉, 정종 후릉의 병풍석 크기를 비교해보면, 조선왕릉 석물제도의 변화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도 9).

<sup>58</sup> 천문서인 『推步捷例』(1861)에서 ‘三十分, 進一度’(30분은 1도로 반올림한다)과 같이 조선시대에 실행된 반올림의 사례를 볼 수 있다.



신덕왕후 정릉  
101×240cm



건원릉  
84×149cm



후릉  
75.6×약 100cm

도 9 병풍석의 크기 변화와 비교(정릉-실측; (건원릉-『건원릉 병풍석해체 보수공사 보고서』(문화재관리국, 1998), p.34; 후릉-『조선왕릉 종합학술보고서 1』(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p.307).

#### IV.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조선왕릉 석인 크기 규범은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며 변천되었다. 고려 공민왕릉의 제양과 척도를 바탕으로 조성된 신덕왕후 정릉에서 시작된 조선왕릉의 석물제도는 태종 대에 독자적인 제도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세종 대에 '五禮'로 일차적으로 완성되었다. 이 내용은 성종 대에 『국조오례의』에 담겨 최초의 禮書로 편찬되었다. 국초에 마련된 제도가 270년 넘게 지속되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자

영조는 1752년에 예제를 재정비하여 『국조상례보편』을 편찬했다가 1758년에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서 개수판본을 편찬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정비과정에서 나타난 석인 크기 규범의 변천 과정을 고찰하였다. 이를 가늠하기 위하여 우선 조선시대 영조척의 실제 크기 문제를 규명하였고, 왕릉 조영에서 사용한 기준 자인 영조척이 시기마다 늘어나거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영조척을 미터법으로 환산하여 기록 문헌의 척수와 실제 능에 배설된 석물의 크기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분석 검토하였다. 이어서 예전에 실린 석인의 크기 규범 중에서 길이를 도출하는 준거가 되었던 사례를 추적하였다. 조선왕릉 예전의 석물제도는 규정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 석물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조성된 왕릉 석물을 근거로 규범을 개정해 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당시에 가장 의미 있다고 여겨졌던 능 석물을 그 준거로 삼았으며, 준거로 삼았던 능의 실제

〈표 6〉 조선시대 석인상의 길이 규범과 기준

구분	문석인 규범		무석인 규범		영조척 (cm)	제도의 기준	관련 능묘
	척	cm	척	cm			
정릉	10	330 (추정)	10	330 (추정)	32.21	공민왕릉과 동일	신덕왕후 정릉
〈국상의제〉	7.5	235.5	7.5	235.5	31.4	정릉의 1/4 축소	건원릉 문석인(1408) 232cm
『세종오례』	8.3	260.6	9	282.6	31.4	〈국상의제〉의 문석인 1/10, 무석인 2/10 확대	소헌왕후 영릉 문석인(1446) 258.5cm
『국조오례의』	8.3	248.2	9	269.1	29.9	『세종오례』와 동일	『세종오례』와 동일
『국조속오례의』	-	-	-	-	-	후릉(정릉의 2/4 축소)을 다른 명릉과 의릉	의릉 문석인(1724) 175cm
『국조상례보편』 초판	5.11	155.9	5.4	164.7	30.5	『[仁顯王后明陵]山陵都 監儀軌』기록	인현왕후 명릉 문석인(1701) 171.4cm
『국조상례보편』 개수판	5.82	177.5	6.2	189.1	30.5	경종 관련 능의 평균	의릉 문석인(1724) 175cm

석물을 직접 실측하여 사용하기보다는 의례에 등록된 기록물을 참조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변천된 석인의 크기 규범을 관련된 능과 함께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표 6).

조선시대의 禮典에 명시된 석인 크기에 관한 규범의 수치가 들쭉날쭉하여 얼핏 무작위로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석인의 규범은 앞선 시기의 典

範과 기록이라는 분명한 준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였다. 게다가 禮典은 단순한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살아있는 문서로, 의례의 규범과 실행의 간극을 없애려고 했던 조선시대 왕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석인 크기 규범이 실제 석물 제작에서 엄격히 적용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 법령으로 구속한 것이 아니라 최소치 혹은 최대치를 정하는 ‘가이드라인’과 같은 기능을 했다. 이렇듯 예전에 명시된 석물의 척수는 절대적인 규정이 아닌 유동성을 지닌 규범으로 여겼기 때문에 조성 당시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왕의 의지에 따라 석물 크기에 변화가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왕릉 석물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물이 되었다.

**\*주제어(key words)**\_조선왕릉(朝鮮王陵,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왕릉석물(王陵石物, Royal tomb sculpture), 국상의제(國喪儀制, Guksangeuije, Formality of State Funerals),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Kukjo Oryeui, Five Rites of the State),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Gugjosangnye Bopyeon, Revised Edition on State Funerals) 척도(尺度, dimension), 영조척(營造尺, Yeongjo-check), 석인(石人, seokin), 문석인(文石人, Munseokin, stone image of civil official), 무석인(武石人, Museokin, stone image of military official)

■ 투고일 2018년 2월 27일 | 심사개시일 2018년 3월 26일 | 심사완료일 2018년 4월 25일 ■

## 참고문헌

### 1. 사료

『高麗史節要』, 『國朝喪禮補編』(1752/1758), 『國朝五禮儀』, 『日省錄』, 『朝鮮王朝實錄』

### 2. 한국어 문헌

건국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남문현 외), 『동률도량형』, 문화재관리국, 1992.

김은미,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왕릉에서 찾을 수 있는 황금비와 금강비』,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김이순, 『세종대왕 '구 영릉(舊 英陵)' 석물 연구』, 『정신문화연구』 114, 2009.

\_\_\_\_\_, 『『세종실록』의 후릉(厚陵) 산릉제도 기록에 대한 고찰』, 『정신문화연구』 130, 2013.

\_\_\_\_\_, 『장릉과 사릉의 석물 연구: 추봉과 석물 간소화를 중심으로』, 『문화재』 55, 2012.

김인철, 『고려무덤 발굴보고』, 백산자료원, 2003.

김환철, 『조선 후기 왕릉 석물조영에 사용된 척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박홍수, 『이조척도에 관한 연구』, 『대동문화연구』 4, 1967.

\_\_\_\_\_, 『한자 숫자의 문화적 의미 결과보고서』, 한국외국어대학교, 2006.

양상현 외, 『조선시대의 척도 변천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5권 제4호, 1999.

여은영, 『고려시대의 량제 : 결부제 이해의 기초로서』, 『경상사학』 3, 1987.

이중봉, 『고려시대의 척』, 『역사와 세계』 24, 2000.

이현진, 『영조대 왕실 喪葬禮의 정비와 『國朝喪禮補編』』, 『한국사상사학』 37, 2011.

임영애, 『개성 공민왕릉 석인상 연구』, 『강좌미술사』 17, 2001.

장경희, 『고려왕릉』, 예맥, 2013.

최현아, 『공민왕릉』, 『역사과학』 4,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조선왕릉 석물조사』 I~II,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2017.

『조선왕릉 종합학술보고서』 I~IX,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5.

『조선유적유물도감』,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1992.

## 국문초록

조선왕릉의 석물은 儀衛의 石儀物로, 『世宗五禮』, 『國朝五禮儀』, 『國朝喪禮補編』 같은 禮典에 석물의 종류, 형식, 수량, 크기 등을 명시하여 규범화했다. 석물의 크기 규범은 시기에 따라 변화했는데, 실제 석물 제작에서는 반영하기 어려운 分(分) 단위까지 세밀하게 규정하기도 했다. 이는 크기의 규범이 임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되었음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조선왕릉 석물 중에서 대표적 석물인 석인을 중심으로 크기 규범의 산출 근거를 추적하며 석물의 척도 규범의 변천사를 고찰하였다.

우선, 조선왕릉 석물 척도 규범의 변천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왕릉 석물제도에 사용되었던 영조척 길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國朝五禮儀』, 『國朝喪禮補編』 같은 禮典에 실린 圖說을 실측하여 영조척의 길이를 밝혔다. 그리고 <국상의제>, 『세종오례』, 『국조오례의』, 『국조속오례의』, 『국조상례보편』에 실린 석인 크기 규범의 변천 과정을 문헌 기록과 실제 능에 설치된 석물의 크기를 비교하면서 고찰하였다.

조선시대 최초의 능인 신덕왕후 貞陵은 아직 조선왕릉 석물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고려 공민왕릉의 制樣과 尺度를 바탕으로 조성되었는데, 청계천 광통교의 부재로 사용되고 있는 정릉 병풍석 크기를 근거로 정릉 석인상이 10尺이었음을 추정하였다. 태종이 건원릉을 조성하면서 왕릉제도를 정비하였으며, 조선시대 최초의 상장제도인 <국상의제>는 건원릉 의궤를 토대로 작성되었고 석인 길이를 7尺 5寸으로 정했다. 7尺 5寸의 크기는 신덕왕후 정릉의 석인 크기 10척에서 4분의 1을 감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조오례의』에서는 문석인을 8尺 3寸, 무석인을 9尺으로 다시 약간 크게 정했는데, 이는 <국상의제>의 석물 크기에 문석인은 10분의 1, 무석인은 10분의 2를 더해 규범화한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왕릉에서 석실과 병풍석이 사라지는 등, 실제 왕릉 造營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영조는 석물제도의 규범을 수정하였다. 1752년 『국조상례보편』 初版本에서 석인 크기를 문석인 5尺 1寸 1分, 무석인 5尺 4寸으로 정했는데, 문석인을 1分(分)까지 명시한 것은 후릉 석물을 척량해온 수치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1758년 『국조상례보편』 改修板本에서는 영조의 선왕인 경종 의릉 석물을 참조해서 문석인 5척 8촌 2분, 무석인 6척 2촌으로 약간 크게 개정하였다.

조선시대 왕릉의 석물 크기 규범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으며, 규범을 정할 때는 당시에 가장 의미 있는 능의 석물을 典範으로 삼거나 참조하여 尺數를 도출하였다. 여기서 典範으로 참조한 석인의 크기는 석물을 실측한 수치라기보다 의궤에 등록된 수치인데, 이는 문헌을 중시하던 조선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조선왕릉 석물 척도 규범은 구속력이 강한 법령이 아니라 최소치 혹은 최대치를 정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조선왕릉 석물은 조성 당시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따르는 유연성이 있었고, 이로 인해 조선왕릉 석물은 더욱더 역사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 A Study on Dimension Regulations of Seokins in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Kim, Yi soon<sup>\*</sup>

Stone sculptures in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were ritual objects whose kinds, forms, numbers, and dimensions were stipulated in ritual codes such as “Five Rites of King Sejong,” “Five Rites of the State,” and “Revised Edition on State Funerals.” Dimension regulations of stone sculptures changed according the period and sometimes specified minimal measures such as a “*pun*” (= 0.3 cm), which hardly made any difference in making actual sculptures. Nonetheless, this suggests that dimensions of stone sculptures were not randomly determined but calculated based on precise criteria. This article reconstructs the criteria for deciding dimensions of stone sculptures and their changes throughout the dynasty, focusing on the most representative stone sculptures of Joseon royal tombs, that is, *seokin* (stone figures of humans).

First of all, the article identified the length of Yeongjo-cheok, which was the standard measure utilized in the regulations on sizes of stone sculptures in the royal tombs by actually checking the dimensions of the illustrations in the ritual codes such as “Five Rites of the State” and “Revised Edition on State Funerals.” Moreover, it investigated the development of the regulations based on “Formality of State Funerals,” “Five Rites of King Sejong,” “Five Rites of the State,” “Sequel to the Five Rites of the State,” and “Revised Edition on State Funerals,” and compared the regulations in different periods with actual stone sculptures installed in royal tombs.

The first royal tomb of the Joseon Dynasty, Jeong-reung of Queen Shindeok, had been built

---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Fine Art, Hongik University

according to the rules, designs, and scales of the tomb of King Gongmin of the Goryeo, before the regulations concerning stone sculptures in royal tombs were established in the Joseon Dynasty. A *seokin* in Jeong-reung is estimated as ten *cheok* (= 30.3 cm) long based on the size of the stone screen of Jeong-reung, which is currently built in the Gwangtong Bridge of the Cheonggye stream. King Taejong established the system of royal tombs during the construction of Geonwon-reung, which served as the standard for making the first funerary rules of the Joseon Dynasty, “Formality of State Funerals.” According to the funerary rules, the length of a *seokin* was to be seven *cheok* and five *chon* (= 3.03 cm). This length of a *seokin* was probably determined by deducting one fourth of the entire length of a *seokin* in Jeong-reung from its original length. Subsequently, the sizes of a *seokin* became bigger based on “Five Rites of the State,” since a stone figure of a civil official and a stone figure of a military official were stipulated as eight *cheok* and three *chon* and nine *cheok* respectively in the new ritual code. The new sizes of the two types of stone figures were decided by adding one tenth of the entire length of a *seokin* in “Formality of State Funerals” to its original length and two tenth of that to the original respectively. In the following period, the constructions of royal tombs changed such as the disappearance of stone chambers and stone screens, and thus King Yeongjo revised the rules of stone sculptures accordingly. In the first version of the “Revised Edition on State Funerals” made in 1752, the sizes of a stone figure of a civil official and a stone figure of a military official were decided as five *cheok*, 1 *chon* and 1 *pun*, and five *cheok* and four *chon* respectively. The reason why the size of a stone figure of a civil official specified even the minimal length of 1 *pun* is because the size wa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measurement of a stone sculpture in Hureung. In the revised version of “Revised Edition on State Funerals” made in 1758, the sizes of a stone figure of a civil official and a stone figure of a military official were made slightly bigger to be five *cheok*, eight *chon* and two *pun*, and six *cheok* and two *chon*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dimensions of the stone sculptures in Ui-reung of King Gyeongjong.

Dimensions of stone sculptures for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were not completely fixed but changed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the period. They were usually decided based on those of the stone sculptures of the most important tombs at that time. However, the sizes of the “model” sculptures were not actually measured but derived from their dimensions recorded in the Royal Protocols, illustrating how the Joseon society regarded textual records as important. The rules of dimensions of stone sculptures in Joseon royal tombs were not enforced as laws but utilized as guidelines. Therefore, sizes of stone sculptures were adjusted based on the economic and political conditions at the time of construction of a royal tomb. For this reason, the stone sculptures of Joseon royal tombs came to have more rich history.